

제334회 정례회
2014. 9. 30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2014. 9. 30.(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병진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6일

(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박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 삭제(안 제12조)
 - 개인,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조례의 규제 삭제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
 - (안 제2조, 제9조부터 제10조, 제12조부터 제13조, 제15조부터 제16조, 제19조부터 제2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홍열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*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요금 징수 조항은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서도 무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, 도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* 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.
 ③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제12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며,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정권고가 있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,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「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칙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장애자용”을 “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2항 및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)을 “법 제5조제3항 및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)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자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상시”를 “항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통학하는 때”를 “통학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법22조”를 “법 제22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	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자전거 이용시설”이란 자 전거도로, 자전거주차장, 기 타 자전거(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 외한다)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「자전거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규 정한 시설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그</u> <u>밖에</u> ----- ----- <u>장애인용</u> ----- ----- -----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6조(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는 법 제5조제2항 및 「자전거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 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<u>법 제5조제3항 및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u> <u>(이하 “영”</u>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 도 로를 개설·확장·재정비하거 나 기업도시·혁신도시 등의 신 도시, 관광단지 개발, 재건축· 재개발,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<u>법 제6조</u>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.	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조</u>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	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자전 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<u>자에 대하여</u>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자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.
제10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·관 리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·관 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 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<u>상시</u> 점검하고 보수·관리하여야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항상</u> -----

한다.

④ 시장·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·② (생략)

③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전거대여소 설치)

① (생략)

②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개인·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

① (생략)

②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제1항

-----.

④ -----

----- 대해서 -----

-----.

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3조(자전거대여소 설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제15조(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에는 자전거타기에 술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6조(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) ①·② (생략)

③ 개인·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19조(자전거의 등록) ① 시장·군수는 법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0조(권한의 위탁)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통학하는 경우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필요한 -----
----- 범위 -----.

제19조(자전거의 등록) ① -----
----- 법 제22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권한의 위탁) ① -----
----- 따른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참 고 자 료

1. 각 시·도별 자전거 주차요금 징수 조항 현황

번호	시·도	주차요금 징수 조항		비 고
		여	부	
1	서울특별시			- 시 조례 없음(구청별 조례 제정)
2	부산광역시	○		- 무료
3	대구광역시	○		- 무료
4	광주광역시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징수 할 수 있음
5	대전광역시	○		- 무료 - 관리 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
6	울산광역시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7	세종시	○		- 무료
8	경기도	○		- 필요시 규칙으로 징수할 수 있음
9	강원도	○		- 무료
10	충청북도	○		- 무료 -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시 군 조례로 정하여 징수
11	충청남도	○		- 무료
12	전라북도		○	
13	전라남도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14	경상북도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15	경상남도		○	
16	제주도	○		- 무료

2. 각 시·군별 자전거 및 주차요금 징수 조항 현황

번호	시·도	주차장 현황 (개 소)	주차요금 징수 조항		비 고
			여	부	
1	청주시	510	○		- 무료
2	충주시	442	○		- 무료
3	제천시	54	○		- 무료
4	보은군	7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5	옥천군	32	○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6	영동군	106			- 조례 없음
7	증평군	36	○		- 무료
8	진천군	17			- 조례 없음
9	괴산군	31	○		- 무료
10	음성군	13			- 조례 없음
11	단양군	14			- 조례 없음